

**결의안 20-110호**

**코로나19와 그외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으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하여  
임대료 인상과 관련된 공공명령을 발령한  
과거 결의안을 연장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중(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24일, 결의안 20-33호에 따라 시의회는 이전 명령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였고, 코스타 하킨스 임대주택법에 의거한 임대료동결에서 면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유닛의 주거용 임대동결을 시행하였다. (1995년 2월 1일 전에 신축된 유닛, 단독주택, 개인콘도유닛)

2020년 3월 25일, 비상사태국장은 임대인상을 이전에 한 것과 상관없이 임대동결명령으로 임대료 동결에 적용하고, 또한 명령이 효력이 없어진 이후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집주인은 새롭게 임대 인상 통지서를 발부하게 하는 규정한 공공명령 5호를 발령하였다.

2020년 4월 14일, 결의안 20-41호에 의해 시의회는 임대료동결에 관한 공공명령 5호를 인가하였고 2020년 5월 15일까지 연장하였고, 2020년 5월 12일에 결의안 20-56호에 의거하여 시의회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그리고 결의안 20-93호에

의거하여 시의회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위험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므로, 과거 결의안과 공공명령 만료일의 연장이 필수 불가결하고 공중 보건과 안전 보전을 위해 추가 보호를 채택해야 한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항. 임대료 인상을 중단하는 비상사태 공공명령과 관련된 결의안 20-93호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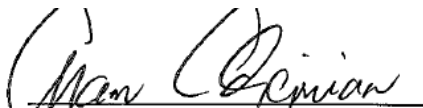
2항. 이 공공명령이나 적용이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경우, 그러한 무효판결은 무효한 조항이나 적용없이 유효한 명령이나 이 결의안의 관, 항,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것으로 각각 구절, 항, 문장, 혹은 단어는 분리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

3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시 검찰청에 회부한다. 경찰관은 각자 재량으로 이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유념한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원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되며, 이에 규정된 집행절차와 함께, 첫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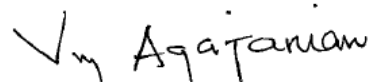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7월 21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증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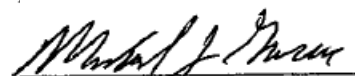


시서기



시장

양식을 승인함



시검사

날짜 7/21/2020

캘리포니아 주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 SS.  
글렌데일 시 )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110호를 2020년 7월 21일에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룩맨, 드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재니안

반대: 없음

결석: 없음

기권: 없음



시서기